

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10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2

다. 상정일자 :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8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농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은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되었기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농지관리위원 선임시 동정자문위원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농지관리위원 선임시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 동정자문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